KOSHA GUIDE

C - 108 - 2017

- (4) 작업 중 유해가스 등의 누출·유입·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.
- (5) 실내에서 작업 시 환기와 배기가 중단되지 않고 균일하게 환기되도록 필요한 전원 등 동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맨홀 및 피트 등 통풍이 불충분한 곳에서 작업 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외부와의 연락장치, 비상용사다리, 로프 등을 준비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
4.4.2 화상예방

용접작업 시 아크광이나 불꽃, 불티, 과열된 금속 및 레이저 등에 의하여 눈, 얼굴 및 신체의 화상재해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(1)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안전장갑, 보안경, 보안면, 보호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용접근로자의 작업복은 가급적 난연성 재질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.

4.4.3 유해광선, 소음 등 방호조치

- (1) 아크용접 시 강렬한 가시광선, 자외선 및 적외선을 포함한 아크광에 의한 안구와 피부 손상을 방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인증을 받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.
- (2) 아크용접 작업장소에 인접한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아크광 차폐시설을 설치한다.
- (3) 용접·용단 작업 방법에 따라 65~105 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며 이는 일시적 및 영구적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음이 85 dB 이상인 경우 차음보호구 (귀마개)를 착용하여야 한다.